■ 해양경찰수사규칙 [별지 제64호의6서식] <개정 2026. 10. 2.>

소 속 관 서

진행번호: 0000보전00호 0000. 00. 00.

수 신: 공소청의 장(검사:) 발 신: 소속관서

제 목: **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** 사법경찰관 ㊞

「형사소송법」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을 신청합니다.

대 상 사 건	0000-000호 000위반
요 청 사 유	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 / 외국의 보전요청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공조 이행을 위해 필요
대 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○○○
필요한 정보의 범위	**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음**
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	**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음**
보 전 요 청 기 간	조치일로부터 00일(60일 이내)
비 고	-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. -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사법경찰관의 전자우편(****@****.***)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별지 1】

필요한 정보의 범위

1. 대상 계정

○ 1234@********.com, abcd@********.com

○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

2. 필요한 정보의 범위

○ 가입자 정보: 사용자 이름, 생년월일, 계정생성일, 휴대전화번호, 복구용 이메일, 인증정보, 가입/탈퇴 일시 및 IP,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

○ 계정 보안 정보: 2단계 인증정보, 복구 전화번호/이메일, 내 기기, 로그인 수단정보 등

○ 접속기록: [UTC+9] 0000. 00. 00. 00:00부터 0000. 00. 00. 00:00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

○ 기기 정보: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(IMEI),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, 통신사 정보, 쿠키값 등

【별지 2】

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

1. 범죄사실의 요지

피의자는 0000. 00. 00. 00:00[우리나라 표준시인 UTC+9 기준]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

2.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